미국, 소 BSE 발견과 대응

1. 의사 양성 가축은 식품체인에서 제외, 지육도 보류

미국 농업부(USDA)는 2004년 6월 25일 강화된 소 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 서베이런스 조사를 이용한 스크리닝 검사(Rapid Screening Test)에서 소 BSE 양성으로 의심되는 검사결과의 보고를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이 조직 샘플은 확정분석을 위해 아이오와주의 연방수의국 검사시설(NVSL)로 보내어졌으며,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어도 4 내지 7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였다. 한편, 소 BSE 양성으로 의심되는 가축의 지육은 식품체인에는 혼입되지 않고 보류되어 있다. USDA에서는 이번 확정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가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하였다.

USDA 동식물검사국(APHIS)의 클리포드 수의사는 “2개의 특유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이러한 검사결과가 나오리라 전혀 예상 못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스크리닝 검사에서는 양성인지 아닌지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이후의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수도 있다. 2번째는, 확정진단 결과가 양성이든 아니든, 미국 쇠고기 공급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는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2. 스크리닝 검사에서 두번째 의사양성 발표

USDA는 2004년 6월 29일 스크리닝 검사(Rapid Screening Test)에서 두 번째로 의사양성 가축의 보고를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25일 발표한 때와 마찬가지로 조직샘플을 연방수의국 검사시설(NVSL)에 보내 확정진단을 실시, 결과가 나오기까지 4내지 7일이 소요된다고 발표하는데 그치고, 해당 가축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공표하지 않았다.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아직 확인 중이라고 하였다.

2.1. 첫 번째 것은 음성으로 발표

USDA는 2004년 6월 30일, 지난 25일에 보고된 첫 번째 의사 양성 사례에 대하여, 연방수의국 검사시설(NVSL)에서 확정진단 결과 '음성'이었다고 발표하였다. 확정진단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면역조직화학적 검사(IHC)를 이용하였다고 하며, 해당 사례는 '음성'이므로 해당 가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베이런스 결과의 공표에 대해서는 웹 싸이트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지난 29일 발표한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중으로 확인까지는 4 내지 7일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USDA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워킹 그룹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미·일 협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2.2. 각 업계단체가 코멘트

육용우 생산자단체인 전국 육우생산자·쇠고기 협회(NCBA)는 2004년 6월 25일, 스크리닝 검사(Rapid Screening Test)에서 의사 양성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나 연방수의국 검사시설(NVSL)에서 확정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하면서, 해당 가축이 식품체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점과

특정위험부위(SRM) 제거가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국 육우생산자로서는 항상 안전한 쇠고기를 공급하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였다. 식육 팩커단체인 아메리카 식육협의회(AMI)의 보일 회장은 지난 26일 USDA 발표를 인용하는 형태로 코멘트를 발표하고, 회장에 대하여 가능한 한 관계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말하면서, USDA로 부터 이러한 발표가 있었던 것은 강화된 서베이런스 조사가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 결과라고 하였다.

더욱이 미국식육수출연합회(USMEF)의 생 회장은 USDA 발표는 의외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진단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은 확보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 유제품수출협회(USDEC)도 지난 27일 과학적 견지에서 우유 및 유제품에서 소 BSE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며, 우유・유제품은 안전하다고 강조하였다.

3. 두 번째 의사양성 케이스도 '음성'으로 발표

USDA 동식물검사국(APHIS)는 2004년 7월 2일, 지난 6월 29일에 의사양성 사례로 보고된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도 아이오와주의 연방수의국 검사시설(NVSL)에서 면역조직화학적 검사(IHC)를 실시한 결과 '음성'이었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해당 결과가 음성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가축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발표하지 않았다.

USDA 동식물검사국(APHIS)는 2004년 8월 2일, 6월부터 시작된 강화된 소 BSE 검사의 상황을 보고, 이제까지는 스크리닝 검사(Rapid Screening Test)에서 한번 이라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이를 의사 양성으로 발표해 왔지만, 앞으로는 2회의 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에만 의사 양성 사례로 공표하는 방법으로 고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지난 6월 하순 2회의 의사 양성 발표에 대하여 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등의 이유로, 업계관계자로부터 USDA에 의사양성 사례의 공표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었다.

4. USDA, 소 BSE에 관한 추가조치를 발표

USDA와 보건사회복지부(HHS)는 공동으로 2004년 7월 9일, 추가적인 소 BSE 예방대책에 관한 잠정최종규칙을 발표하였다. 보건사회복지부(HHS) 식품의약국(FDA)은 이 규칙에서, ① 특정위험부위(SRM), ② 모든 월령 소의 작은 창자, ③ 기립불능・보행곤란 소에서 유래된 것, ④ 식육검사 및 식용으로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쇠고기에서 유래된 것, 기계적으로 제거한 것 등에 대해서는, 영양보조제, 영양제, 인공유, 통조림, 냉동식품,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화장품,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하였다.

더욱이 특정위험부위(SRM)는 30개월령 이상이면 뇌, 머리, 눈, 삼쇠신경절(三攵神經節), 척추, 척수, 배근신경절(背筋神經節)로 하고, 월령에 관계없이 모든 것의 편도, 작은 창자의 회장단(回腸端)을 그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이번 규칙을 확실히 하기 위해 식품 및 화장품 등의 제조 및 가공업자는 앞에서 기술한 금지품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을 보유할 것을 규칙으로 하고 있다.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제조, 가공업자가 도축장(팩커) 등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할 때 그 곳에서 가공금지품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미의 날짜와 서명이 들어간 확인서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규칙은 90일 간의 퍼블릭 코멘트 기간을 설정하였지만,, 규칙은 7월 14일부터 잠정 시행토록 하였다.

이번 식품의약국(FDA)의 규정개정과 관련하여 USDA 동식물검역국(APHIS), 동 FSIS(식품안전국) 및 FDA(식품의약국)는 규칙안제정전 사전통지(ANPR : Advanced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 연방·주 정부가 법령을 제정하기에 앞서 법안을 공개, 널리 일반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에 기초하여,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8월까지 의견을 청취하기로 하였다.

⑴ 사료의 제조, 유통 및 농가단계에서 잘못된 사료급여에 의해 발생한 교차오염의 위함을 회피하기 위해, 애완동물 사료를 포함한 모든 동물사료로부터 특정위험부위(SRM)의 제거

⑵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 및 수송시 사료 및 원료의 취급 및 저장을 위한 전용 기자재 또는 시설 정비를 의무화

⑶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모든 포유류 및 가금 유래의 단백질을 반추동물 사료로 사용 금지

⑷ 기립불능·보행곤란(다우너) 소 및 죽은 소 유래의 원료를 모든 동물 사료로 사용할 것을 금지.

또한, USDA 동식물검역국(APHIS)는 전국 개체식별 시스템(National Animal ID)에 대해, 시간, 상황에 관계없이 이를 의무화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축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있다고 한다.

이번 발표에 대하여 관계단체 등이 코멘트를 발표하였다. 식육팩커단체인 아메리카식육협의회(AMI)의 보울 회장은 지난 8월 9일, 이번 규칙에 찬성하며 이를 100%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의 코멘트를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특정위험부위(SRM)의 사료급여 금지를 반추동물 이외의 동물에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하였다.

한편, 미국 전역의 약 300개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아메리카 소비자연합회(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는 7월 9일, 정부는 올해 1월에 발표한 규칙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약속하였지만, 이것이 6개월이나 늦어졌다는

점에 대하여 비판하는 코멘트를 하였다.

캐나다도 특정위험부위(SRM)의 사료급여 금지 규칙을 발표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8월 9일, 소 BSE 대책의 추가적인 조치로 가축사료에 특정위험부위(SRM)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강구한다고 발표하였다. 카나다에서는 1997년 이후 반추동물에서 유래하는 사료를 반추동물에 급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왔지만, 이제부터는 돼지나 닭의 사료에서도 특정위험부위(SRM)나 죽은 소에서 유래되는 단백질의 이용이 금지되게 된다.

자료 : http://alic.lin.go.jp(畜産の情報(海外編), 2004년 9월호)에서

(허 덕 huhduk@krei.re.kr 02-3299-4261 한국농촌경제연구원)